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098호 2015. 6. 29.(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7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73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7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75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7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노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8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 뒷면 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81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5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82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6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58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7
---	----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심의회 운영 규정 폐지훈령 -----	93
--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9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9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2-166호선)결정(경미 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	9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861호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	9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862호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 · 공고 -----	10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7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전문가의 구정참여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구민 불편·불만사항 제보
2.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
3.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4.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종 사업현장 점검 및 개정·시정 의견 제시
6. 지역 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7. 그 밖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구민감사관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서구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
- ② 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③ 구청장이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 ④ 그 밖에 구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임기) 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구민감사관의 책무) ①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구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척 등)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조사의 내용과 직접·간접 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한다.

② 수감기관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제보사항 처리 등) ① 구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구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제보·건의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할 때까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보된 내용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해 구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감사·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현장방문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구민감사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제3조제3항 관련)**위 촉 장**

(주 소)

(성 명)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귀하
를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별지 제3호서식]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서(제8조제1항 관련)

건 명				
구민감사관	성 명	(서 명)	전 화	
	주 소			
제 보 내 용 (사 실 내 용)				

○

처 리 방 법 (처 리 의 건)

○

상기 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보·건의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제보·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구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접수부(제8조제2항 관련)

접수 번호	접수일	제보자			관련기관(부서) 이송일/ 관련기관 (부서)명	결재		완료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보내용 (요약)		담당자	담당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구민감사관 제보사항 등 처리부(제8조제4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시	:	처리일시	:
제 출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처리(관련) 부 서		처리방법	서면(), 전화(), 면담(), 기타()		

처리결과 회신내용(요지) 제보 내용

-
-

 처리 및 조치 내용

-
-

처리구분	완결()	처리중()	불가()
------	-------	--------	-------

-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한다.
- ⑦ 동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 ⑧ 동 대표는 해당 동 단원중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 ② 단장은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비상연락망정비 등을 담당한다.
- 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서구 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는 회장 또는 단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제4호, 5호에 따른 단원 해임사항
 3. 구청장이 그 밖의 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장 또는 동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단,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서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 및 교육, 훈련 참여 등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0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제출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11. 안전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12.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활동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방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비, 여비, 유류비 등 필수경비. 다만, 식대 및 여비 등 실비는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의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하며 단원

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 호

위 축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
방재 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남,여	생년월일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
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00동 대표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화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 태풍. ○ 지역 집중호우, ○ 지역 재설 등	
	방 법		
	시 간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시간)	
	장 소		
	내 용	※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 지역 사전예찰, ○시간 ○○ 마을 차량통제, ○ 시간 등	
[건의사항]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횟 수	시 간	
1				
2				
3				
4				
5				
6				
7				
8				
9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장 0 0 0 (인)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작성 가능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서구 심볼 사용

서구 직인 사용

제4조의 제목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를 “(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를 “(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을 “사용가능액”으로 한다.

제6조제13호 중 “영 제74조 제1호, 제2호”를 “영 제74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로, “소요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밖에”를 “그 밖”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담당과장”을 “담당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기금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며, 공무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이”를 “재난관리기금 담당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2조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0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 간”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수유예 등”을 “징수유예등”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을 “(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수유예 등”을 “징수유예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분야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	8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	8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800원	
(5) 건설공시기성실적증명(물품, 용역)	1통당	300원	
(6) 선급금 정산확인원	"	300원	
(7)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당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8)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1통당	600원	
2. 문화관광체육분야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	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9)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10)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1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60,000원	
(1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50,000원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30,000원	
(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수수료	"	30,000원	
(1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0,000원	
(18) 영화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9)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5,000원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3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	4,000원	
(3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00,000원	
(3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50,000원	
(3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30,000원	
(3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20,000원	
(40)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50,000원	
(4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등록신청 수수료	"	30,000원	
(4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4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44)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	30,000원	
(4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 부동산중개업분야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	30,000원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800원	
(4)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	10,000원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	800원	

(6)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수수료	"	0원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	800원	
4. 농수산업분야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	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	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5,000원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8)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	30,000원	
(9)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1,000원	
(11)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5,000원	
(12)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13)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	1,000원	
(1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5)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16)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17)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2,500원	
(18)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9)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	1,000원	
(2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000원	
(2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000원	
(22)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1,000원	
(23)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24)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1,000원	
(2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26)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7)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2,500원	
(28)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9)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	4,000원	
(30)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	4,000원	
(31)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1,500원	
(32)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2,000원	

(33)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2,000원	
(34)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2,000원	
(35) 어업 신고 수수료	"	1,500원	
(3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1,500원	
(37)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원	
(3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000원	
(39)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	800원	
(40)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41)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800원	
(42)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43)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3,000원	
(44)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	3,000원	
(45)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2,000원	
(46)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7)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8)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4,500원	
(49)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0)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1)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5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4)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6)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1,000원	
(57)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3,000원	
(5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59)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60) 어획물 운반업 등록	"	5,500원	
(6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	500원	
(62)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 허가	"	1,000원	
(63)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 허가	"	500원	
(64)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1,600원	
(65)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800원	

(66)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 허가, 변경 허가 포함)	"	2,000원	
(67)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 허가, 변경허가 포함)	"	1,000원	
5. 공장설립분야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	1,000원	
6. 석유판매업분야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	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7. 환경분야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	10,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	0원	
8. 보건사회분야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4)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6)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	10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	20,000원	
(8)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	40,000원	
(9)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10)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	100,000원	
(11)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	20,000원	
(12)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40,000원	
(13)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	800원	
(14)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당	500원	
(1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당	40,000원	
(16)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20,000원	

9. 도시계획분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1,500원)	
(2) 환지(예정지) 증명	1통당	400원	
10. 교통행정분야			
(1)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	1,500원	
(5)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원	"	1,000원	
11.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본·초본	1통	200원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3)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	1건	500원	
(4) 건축물관리대장	1건	4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개년필지	600원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칼러불가)	8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	1건	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200원	
- 관외	1건	2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400원	
- 관외	1건	1,200원	
(10) 농지원부	1건	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1건	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500원	
- 제적초본	1건	300원	
(12) 검정고시증명서			
- 성적·합격증명서	1건	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	1건	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고등학교)	1건	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5) 장애인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6) 수급자 증명서	1건	무료	
(17) 병적증명서	1건	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1,000원	

[별표 3]

정보 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켄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켄(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켄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p>○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p>○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p>※ 매체비용은 별도</p> <p>○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	---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라한다)”를 “이라 한다)”로, “나라사랑정신”을 “나라사랑 정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중 “조례의 규정을”을 “조례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행사시”를 “행사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행사시”를 “행사 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훈단체 비용보조)”를 “(보훈단체 예산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정신과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4.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5. 국립묘지, 현충탑 참배 및 국립 현충원 지킴이, 환경정화 활동
6. 국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사업
7.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9조의2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를 “「인

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범위 내”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3개월”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계법령의 규정”을 “관계 법령”으로, “자와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람과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신청일로부터”를 “신청일부터”로 하고,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을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인천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사망일로부터”를 “사망일부터”로, “신청일로부터”를 “신청일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을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으로, 같은 조 본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제9조 관련)

호	사업명	세부내용
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 및 불우회원 위안행사 ○ 보훈병원 위문 행사 ○ 건강관리를 위한 게이트볼 육성 ○ 환자 수송
4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전쟁 기념 행사 ○ 호국보훈의 달 행사 ○ 천안함 추모식 ○ 보훈단체별 창립 기념행사
5	국립묘지, 현충원 참배 및 국립현충원 지킴이, 환경정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충탑 참배 및 주변 정화사업 ○ 국립묘지 및 현충원 참배 및 지킴이 활동
6	국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 교육 ○ 안보 대회
7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가정 방문 및 병문안 ○ 환경정화사업, 환경보호캠페인 ○ 국기계양운동 ○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 불우이웃돕기 및 나눔 봉사 활동 ○ 재해·재난 교육 및 훈련 ○ 독도 지킴이 활동 ○ 해상 수중 정화 활동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수 급 권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일시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종 류	은행명	지급계좌
					수 당		
					사망위로금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10일전까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1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을 “보험료 지급 및 안내”로,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를 지원대상자별로 수납처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서구의 예산으로 수납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험료 정산) 공단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한 보험료 중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거나 보험료 납부사유 소멸로 지원받은 보험료의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달 보험료 청구 시 정산하여 차감 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3명 이내
2.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3.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 2명 이내

③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으로 한다.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20조 중 “제12조”를 “제1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2항 중 “주택허가담당”을 “공동주택관리센터담당”으로 한다.

제8조 각 호의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8조제4호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진행중”을 “진행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운영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를 “운영 등에 필요”로, “운영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정신청 내용				
분쟁발생 사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대표자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결서

조정건명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내용				
조정결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위원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결통지서

조정건명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용			
조정결 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출 석 요 구 서

조정건명				
신 청 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비고
				(참고인, 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00:00)			
출석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거 부 · 중 지) 통 보 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 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 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연간 활동계획

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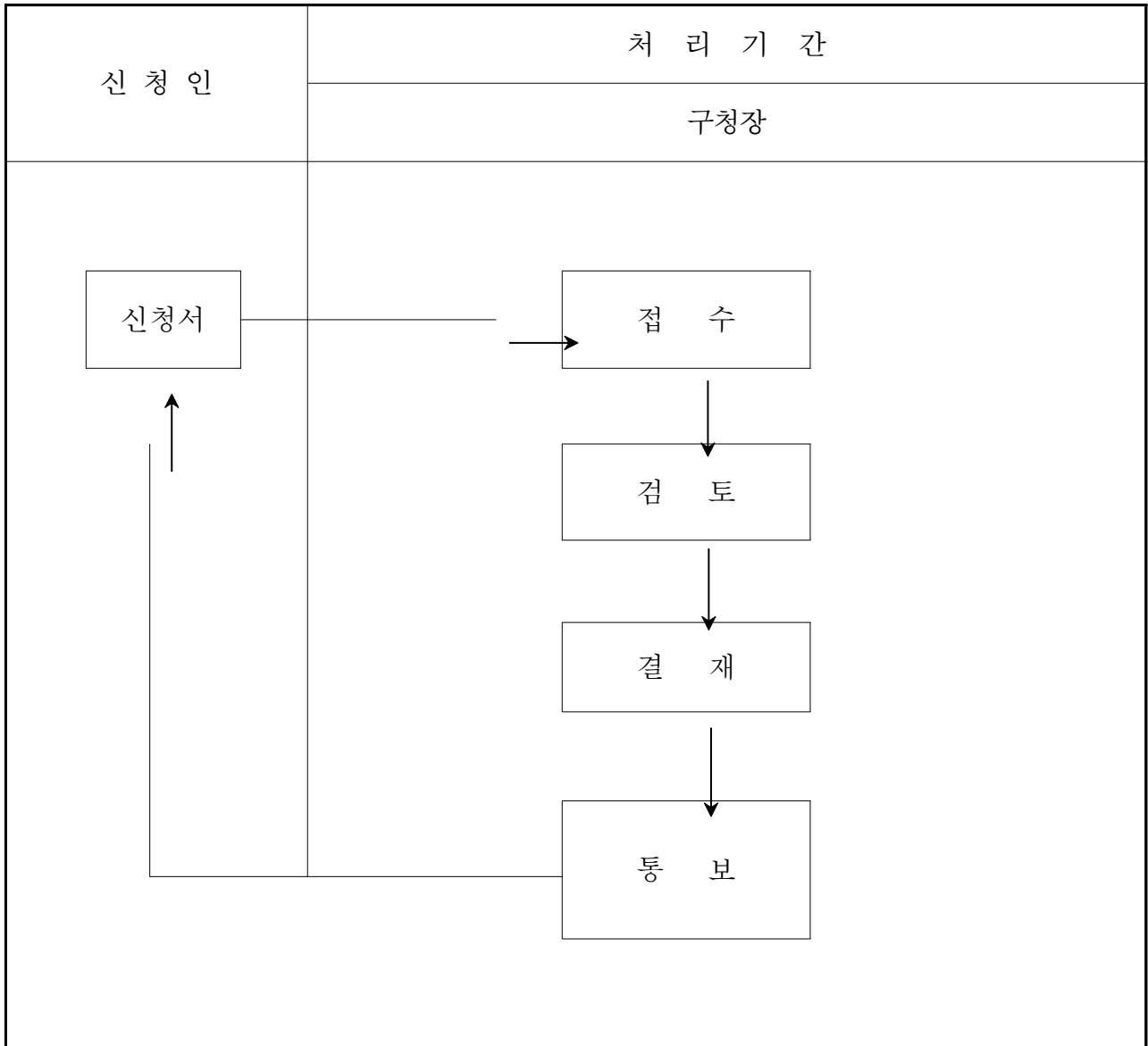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4호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p style="text-align: right;">(앞 쪽)</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금연지도원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60%;"> <p style="text-align: center;">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p> </div>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60mm×90mm</p> <p style="text-align: center;">(색상 : 연파랑)</p>	
<p style="text-align: right;">(뒤 쪽)</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소 속:</p> <p>성 명:</p> <p>생년월일(성별): ()</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 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p> <p>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 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p> </div>	
<p>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² or 플라스틱</p>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p>「인천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에 따라 관할구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당해기관”을 “해당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2조제4항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법 제63조의 규정”을 “법 제68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으로,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내의 수급자

제15조제1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30ℓ 이내로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봉투구입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중 “법 제6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7일 이내에 10일간”을 “50일 이내에 10일 간”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를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를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를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별표 8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300	500	700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흘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아)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	200	400	600

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4)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료폐기물 보관용기의 경우 법 제 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500	700	1,000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400	600	800
다)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라. 법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사.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경우				
아.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차.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카.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3	300	600	1,000
타. 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파.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하.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거. 법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3	50	70	100
너. 법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더.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러.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	법 제68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경우				
<p>며.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p> <p>1)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수집·운반한 경우</p> <p>2)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p> <p>가)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않은 경우</p> <p>나) 운반비·처분비·재활용비 또는 운반·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p> <p>다)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라) 나)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p> <p>마)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p> <p>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한 내에 사후정산하지 않은 경우</p> <p>4)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말한다)</p>	법 제68조 제1항제3호			
		300	500	700
		500	700	1,000
		500	700	1,000
		500	700	1,000
		300	500	700
		500	700	1,000
		500	700	1,000
		500	700	1,000

5) 수집·운반능력,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				
가)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나)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	500	1,000
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서.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저.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6호	50	70	100
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커.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2	100	200	300
허.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3	100	200	300
노.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0호	50	70	100
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1호	100	100	100
모.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보.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소.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오.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조.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초.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코.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1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의 규정
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일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민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인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시종은 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과태료납부서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통보용)

제 호 영수필통지서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보관용)

제 호 영수증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별지 제3호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을)							(피처분자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p>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 나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지가 바랍니다.</p> <p>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합니다.</p> <p>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민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p>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별)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취 급 자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무)		(인천광역시서구청통보용)					
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수납일부인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34g/m²)

(별지 제5호서식)

(개인통지용)

제 호 과태료독촉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		
과태료납부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2배에 이를 때까지 시중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과태료독촉납부서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		
과태료납부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인천광역시서구청통보용)

제 호 영수필통지서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		
영수필납부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납부자보관용)

제 호 영수증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		
영수증납부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폐기물관리법 제68조와 관련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 에대한이의 제 기 자	①성 명 ③주 소	(한자)	②주민등록 번호
과 태 료	④고지일자		⑤과 태 료 금 액
처 분내 역	⑥부과기간		⑦이 의 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58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영업소 위치			
판매소 구분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2. 예정판매소 약도 1부.			수수료 영 100 원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쓰레기 봉투 판매 지정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소위치			
판매소구분			
<p>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쓰레기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p>			
<p>년 월 일</p>			
<p>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p>			

(뒷면)

판매자 준수사항

1. 쓰레기봉투판매지점서 및 표지판을 주민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게첩)하여야 한다.
2. 봉투판매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주민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진열장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건전한 상행위를 다하여야 한다.
4. 판매인의 명의(승계)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일 10일전 판매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또한, 판매인(대표자)의 사고, 기타 사유로 휴·폐업하고자 할 경우 즉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기타 건전사회풍토 조성에 물의를 빚어 계도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심의회 운영 규정 폐지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심의회 운영 규정 폐지훈령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심의회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6.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염곡로327번길 4-8외 2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6-2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신현동 143-19	염곡로327번길 4-8	2015-06-12	건물 멸실	
2	인천 서구 경서동 372-3	경명대로263번길 20	2015-06-18	건물 멸실	
3	인천 서구 오류동 154	백석산로54번길 38-10	2015-06-18	건물 멸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 - 9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2-166호선)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2-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서구청 도시개발과(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6.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2-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도로) 변경에 관한 계획
2. 위 치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6번지 일원
3.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66	15	집산 도로	285 (14)	광로 3-27	인천세무고등학교, 당하동 943-6	일반 도로		'99.6.23	
변경	중로	2	166	15	집산 도로	285 (14)	광로 3-27	인천세무고등학교, 당하동 943-6	일반 도로		'99.6.23	

※()는 금회 사업구간(세무고등학교 진입도로) 연장임.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66호선	중로 2-166호선	○ 도로선형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 기존도로와의 선형일치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사업(미개설구간)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도로시설 : B=15m, L=14m, A=207㎡(금회 사업구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도로	중로	2	166	15	15	285	271	14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학교법인 봉선학원 이사장 이재옥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33(십정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0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당하동	942-6	전	67	1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	
2	당하동	943-19	구	112	102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	
3	당하동	943-6	잡	52	52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	
4	당하동	943-10	답	436	24	김한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5-31	-	-	-	
5	당하동	산214-1	임	15,195	28	이대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40-15 제일아파트2동 909호	-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중로	2	166	15	집산 도로	285 (14)	광로 3-27	인천세무고등학교, 당하동 943-6	일반 도로		'99.6.23	

※()는 금회 사업구간(세무고등학교 진입도로) 연장임.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861호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토지 소유자께서는 보상협의를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 06.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0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공고기간 : 2015. 06. 29(월) ~ 2015. 07. 13(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보상협의 방법 및 절차

- 협의기간 : 2015. 06. 29 ~ 2015. 07. 28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5층, 032-560-4493)
- 협의 방법 및 절차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구비서류 :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일반용1통, 매도용1통), 주민등록초본 2통(주소이력포함), 신분증,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통, 통장사본 등

4. 공시송달 대상자

구분	성명	주소	사업구간 편입 토지내역						비고
			동명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	잔여	
1	안역만	인천 서구 석남동 445-1 (8/4)	신현동	190-4	도로	8	8		주소불명
2	박치원	인천 서구 염곡로 383번 길 28(신현동)	신현동	206-1	답	1,487	1,487		주소불명
3	정행숙	인천 서구 서달로49번길 16-21(석남동)	신현동	231-2	전	172	172		폐문부재

5.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862호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48호(2009.11.16)로 지정된 석남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92호(2014.06.30)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되었기에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6.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구역의 명칭 :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

가. 정비구역 해제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석남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8번지 일원	32,177.7	감)32,177.7	-	해제

나. 정비구역 해제 사유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해제)사유	비고
석남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환원에 관한 사항

-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석남6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폐지

3. 공람에 관한 사항

가. 공람기간 : 2015.06.29 ~ 2015.07.30

나. 공람장소 :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032-560-4592)

다. 공람내용 :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

4. 관련도서 : 계재생략(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에 비치)

공 램 의 견 서

공람내용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공람기간	2015.06.29.~ 2015.07.30.			
부동산 소재지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제출일				
<p style="margin-left: 20px;">내 용</p>				